

의무기록 사본/CD복사/진단서 및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안내

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.

▶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의무기록 사본/CD 복사/진단서 및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	
환자본인의 경우	환자 본인의 신분증
환자친족의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 서식의 동의서 (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,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) 4. 환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. 환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(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)
환자가 사망한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(혹은 사본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지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, 학생증(만17세 미만) (건강보험증 제외)

친 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

최초(원본) 진단서 발급 : 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 의거 본인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발급과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만 환자의 친족 및 형제·자매(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)를 통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에도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상기 안내와 같이 발행하여 드립니다.

- 의무기록 사본(의무기록팀) 053)200-2077
- 영상저장(영상의학센터) 053)200-2078
- 진단서(원무과) 053)200-2066

※ 발급 창구 위치 2동 1층, 2층 / 6동 1층, 2층 / 어린이병원 1층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환자의 권리

- 진료 받을 권리
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, 성별, 나이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

-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
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결정할 권리

-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
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상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 할 수 없음

- 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

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

환자의 의무

-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 의무
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
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

